

경제사업 이행현황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공고·통보

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 및 계양농협 정관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23년말 경제사업이행현황 평가 결과, 이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고·통지합니다.

□ 경영개선 조치사항

조치사항	통보일	이행기일
경제사업부문 경영개선권고	2024.03.14.	2025.12.31.

□ 경제사업기준 이행현황

(단위 : %, 백만원)

구 분	2022년말	2023년말
신 용 사 업 매 출 액 ... (A)	38,123	57,410
경 제 사 업 매 출 액 ... (B)	8,675	8,874
도 농 상 생 기 금 (평잔) ... (C)	1,952	2,172
출 하 선 급 금 (평잔) ... (D)	5,590	6,019
공 동 사 업 투 자 금 (평잔) ... (E)	0	0
지분법적용 투자주식 (평잔) ... (F)	0	0
경제사업 비중 [(B+C+D+E+F) ÷ (A+B+C+D+E+F)] × 100	29.8	<u>22.9</u>
이행기준 (목표량)	20.0	<u>25.0</u>
이행기준 준수현황	준수	<u>미준수</u>
경제사업 부족물량	—	<u>2,071</u>

우리 농협은 위와 같이 2023년말 경제사업이행기준 미준수로 「경제사업 부문 경영개선권고」 조치를 받았습니다. 이는 신용사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비해 관내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사업의 성장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, 유통시설 신축, 양곡·떡국떡의 판매확대 등 적극적인 경제사업 이행을 통해 경영개선권고 요건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.

2024.03.27.

계 양 농 협 협 동 조 합 장